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사항 안내 (21.02.17~21.03.09 일부 시범운영)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시 제31조에서 수입물품 검사절차 사항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검사절차는 시범운영을 거쳐 보완 및 확대 후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된 수입물품 검사절차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개선사항

1. 검사계획 통보 및 접수

- 검사자는 검사준비 사항 등 확정된 검사계획을 **장치장소 관리인** 및 **신고인**에게 시스템으로 통보
- 시설 미비 등으로 시스템 수신에 어려운 경우 구두 통보

2. 창고관리인 검사 협조 하에 검사 실시

(1) 창고관리인의 검사준비 사항

-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을 열고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배치
-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검사 직원의 검사실시에 협조

- 기타 검사직원의 검사실시에 협조(물품의 포장상태 및 내용물품의 파손여부 등 확인)

3. 화주 및 관세사에게 검사준비 사항 통보

- 검사계획 통보에 따른 창고관리인의 검사준비 등 협조가 안된 경우 화주에게 검사준비 통보
- 화주의 수입통관절차 대리인으로서 관세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검사준비 및 참여 가능

4. 인천공항 항공화물 터미널의 경우 지정장치장 이고 후 검사

- 인천공항 터미널 반입(예정)물품으로 검사 지정된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 지정장치장으로 이고하여 검사

* 대상 터미널: 대한항공(04077003), 아시아나(04077007), 에이에이씨티1터미널(04077010), 에이에이씨티2터미널(04077177), 스위스포트(04077011), 한국공항(04077006)

II. 추진 일정

1. 시범운영

각 세관(과)별 보세창고 또는 화물터미널 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 인천항, 김포공항: 2.17~3.9까지 각 과(수입 1·2과, 통관지원과)별 보세창고 시범운영 후 보완 및 확대 (3.10~)
- 인천공항: 2.17~3.9까지 각 과(수입1·2과, 특송3·4과)별 1개 화물터미널 1개소, 자체시설 등 시범운영 후 보완 및 확대(3.10~)

2. 전면시행

세관별 시범운영 결과 미비점 보완 후 전면시행(3.24)

* 첨부파일

- 별첨 1.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 안내

| Contact



양다윤 관세전문가

T 02.6011.3056
E dyyang@esein.co.kr



박상운 관세전문가

T 02.6011.3106
E swpark@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